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99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의자:박범계·고용진·이수진비

양정숙 • 김민철 • 이성만

김경만 · 장철민 · 조승래

박영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일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회계책임자와 비교하더라도 과소한 금액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간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

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 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의 선거사무원에게 지
	급되는 수당의 시간급은 「최
	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
	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
	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	
會가 정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4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	
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	
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	
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5. ~ 7. (생 략)	
② ~ ⑧ (생 략)	

<u>제4항</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